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단506700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임다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이서인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7,702,580원 및 그 중 752,202,625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438호로 피고와 D, C을 상대로 D의 대출금 채무 및 그에 대한 피고와 C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4.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1. 6.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28.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하며,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선행 판결채권 내지 채무’라고 한다).

나. D는 2012. 5. 1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31.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2하단4965, 2012하면4965 사건, 이하 ‘선행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2. 21. 확정됨으로써 D의 선행 판결채무는 면책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1. 25. 선행 판결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었고, 이의신청을 도과하여 이의를 한 C에 대한 부분은 2021. 2. 9. 확정되었다.

라. 선행 판결채권의 잔여 원금은 752,202,625원이고, 2020. 10. 21. 기준 미지급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2,865,499,9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2020. 10. 21. 기준 원리금 3,617,702,580원(= 잔여 원금 752,202,625원 + 미지급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865,499,955원) 및 그 중 잔여원금 752,202,6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율(연 19%) 범위 내에서 원고의 내부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선행 판결 변론종결 전의 사유(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원고의 불법대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주채무자 D가 담보가치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를 인수한 것, 원고의 대출금 채무 승계 거절, 관리부실로 인한 근저당권 목적물의 불법멸실,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권양도 시 평가금액과 실제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과의 차이 등)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인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E와 F에 대하여 담보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 F부터 변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E, F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제1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5. 11.경 선행 판결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사실, ② 원고의 직원이 2012년경 피고와 D 등에게 D에 대한 파산면책에 관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D가 선행 결정을 받은 사실, ③ 선행 판결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은 피고 등이 2015년경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2015. 10. 28.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④ 한편 C이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의

직원이 2012년경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D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면서 연대보증인들(피고와 C)에게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채권을 추심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거나 채권 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의적으로 채무 면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8. 25.자 피고 준비서면 제8면 각주 2)항], ②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내부 전산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증인 H의 증언녹취서 제31, 32면), 원고가 선행 판결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선행 판결채권의 회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면, 피고나 C에 대하여도 파산면책을 권하였을 것이나 그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파산면책을 안내하는 과정 또는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에게 한 의사표시가 선행 판결채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표시한 면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집행제한계약이나 부집행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채권의 소구력 또는 신소 제기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저지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집행제한계약이나 부집행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